안세재경저널 회원용 · 2024년 11월 27일(수) · 주간 제48호 · 통권 제1703호 · 연말정산 주요 공제항목별 계산사례 구독료 월 30000원

상장사·중소기업의 투명회계·적법세금·성공경영 정보

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공인회계사 조세저널 eAnSe.com

온라인 30분내 Q&A 문서답변과 방송

경영박사

중기업 경영관리 외주화

2024/ 11/ 27 통권 1703호

CEO·CFO·COO·회계책임자·조세전문가·재경실무자·총무담당자·모든 관리자용 名品 주간지

금융소득 종합과세 관련 주요 문답

CFO·회계실무자·조세전문가 정보

- 리스크 등급 결정 실무 사례
- 면세사업자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 연말정산 주요 공제 항목별 계산 사례
- 금융소득 종합과세 관련 주요 문답

CMO·마케팅 Tax consulting 섹션

- 비디오 아트작품을 양도하는 경우는 서화·골동품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기타소득과세대상 아니고 일반사업소득임 (p.12)

전직원 회람 공지 MEMO+경영관리자의 재무의사결정과 稅·計·經營 戰略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양도와 일반양도세율 + 10% 추가세율 적용〉

개념구분	업무용 양도 (일반종합소득세율)	비업무용 분류 (일반세율 + 10% 가산율)
과세방법	다단계누진세율(6%~45%)	다단계누진세율 + 10% 세율 추가함
일반토지	지방세 과세·면제 토지, 재산세 별도합산, 분리과세 대상토지, 사업관련 적격기준범위 토지	각종 사업 용도적격 기준범위 초과 토지 (재산세 종합합산토지)
주거용 토지	주택부수면적(수도권 3배, 녹색지역 5배, 수도권 밖 10배 토지)	별장(휴양, 피서, 위탁용) 부속토지
일반농지	농지소유지 거주, 자기경작농지, 재촌직접경작	농지소유지 비거주나 자기경작 아닌 경우
도시농지 등	도시지역 편입된지 3년 안된 농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의 농지
일반임야	임야소재지·연접지에서 직선거리 30km 이내 주민등록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경우	주민등록이 직선거리 기준 30km밖이 거나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
특별임야	임업후계자의 종자·묘목용, 자연휴양림 운영자, 수목원운영자, 상속 3년내 임야, 종중임야 등	왼쪽 열거된 경우가 아닌 임야
목장용지	축산업 경영자 토지, 축산기준면적내 토지, 상속받은 목장으로 3년내 용지	축산용 기준면적 초과, 도시지역 내 토지
특별용도	운동장, 경기장, 주차장 부설토지, 청소년 수련시설	특별용도 기준면적 초과 토지

(안세회계법인 대표이사 박윤종공인회계사 작성)

안세회계법인 02-829-7557

회계·경리·세무·재무·인사·노무·총무·법무·기획·재경(AnSe consulting)

경영관리·총무 outsourcing + secretarial 서비스 + 중소기업창업·보육·지원센타

안건조세정보 02-829-7575

주간 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통권 1703호 / 주간 48호 2024. 11. 27. (수)

·발 행 인 : 이윤선
·제 작 : ㈜안건조세정보
·대표전화 : 02) 829-7575
FAX : 02) 718-8565

♣ 회원가입 문의 안내

• 서울·수도권·경기·인천
전화 : 02) 829 - 7575
팩스 : 02) 718 - 8565
• 부산·경남
전화 : 051) 642 - 3988
팩스 : 051) 642 - 3989
• 대구·경북
전화 : 053) 654 - 9761
팩스 : 053) 627 - 1630
• 대전·충청
전화 : 010) 3409 - 2427
팩스 : 042) 526 - 1686
• 수원·안산
전화 : 010) 5255 - 6116

♣ 매월 구독·자문료 5만원
온라인 입금계좌
• 우리은행
594 - 198993 - 13 - 001

정회원(주간+월간 등)
월 구독료
5만원

eAnSe.com의 차별화 특장
① 오늘 30분내 Q&A 전송
② 핵심내용 영문번역
③ 재경전반 동영상강의
④ 즉답(010-2672-2250)
⑤ 온라인 세무상담실
⑥ 모든 정보 통합검색
⑦ 마케팅 세무회계전략
⑧ CEO·CFO 경영에세이
⑨ 전담회계사 파견자문
⑩ 세무·회계·재경고문
⑪ 최고경영자의 세금전략

본지는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목 차

최고경영자 재경전략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양도와 일반양도세율 + 10% 추가세율 적용	표지
CEO의 경영산책	리스크 등급 결정 실무 사례	2
세무·회계상담자문 (남들은무슨고민할까?)	- 고용증대세액공제 해당 여부	5
	- 직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였으나, 현실적인 퇴직이 아닌경우 세법상 처리 문의	
	- 양도담보부채무변제	6
	- 촉탁계약직 채용시 정부지원금 수령 시 회계처리	
눈에맞는절세미인	면세사업자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7
매일절세재무요점	- 올해 달라진 연말정산 공제 항목	9
	- 소득세 물가 연동제 운용하는 주요국	10
직장인Survival	상대의 성격에 따른 설득법 6가지 ②	11
최신판례예규 (이런저런유권해석)	- 양도시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서화·골동품의 범위에 "비디오 아트"는 포함되지 아니함 (서면법규소득-2543, 2024.01.11)	12
	- 대주주여부 판정시 조합원계정에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를 포함하는 것이며, 이 때 우리사주는 「근로복지기본법」 제43조 및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예탁기간의 구분과 관계없이 소유주식에 포함하여 대주주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서면법규재산-474, 2024.04.22)	13
세정뉴스와 해설	'연말정산 자료' 따로 제출할 필요 없어요 …30일까지 자동제공 이용신청	14
마케팅 Tax consulting	비디오 아트작품을 양도하는 경우는 서화·골동품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기타소득과세대상 아니고 일반사업소득임	12
세무정보	- 연말정산 주요 공제 항목별 계산 사례	15
	- 금융소득 종합과세 관련 주요 문답	32
세무환율정보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48

리스크 등급 결정 실무 사례

이 재 권 안세회계법인 지속가능경영자문센터장
공인회계사, 경영학박사, CIA
한국윤리경영학회 산학협력 부회장 (현), 서강대 내부감사전문과정 교육운영위원
서울시립대, 국립 한밭대 겸임교수, 한국회계정보학회 부회장
한국경영교육학회 산학협력 부회장,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민관협의회 공정신뢰분과위원장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ERS(Enterprise Risk Services) 부대표
한국공인회계사회 정보기술연구위원장
Touche Ross Australia, Melborne : Advanced Technology Group 근무

CEO 관점에서 리스크 우선순위 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리스크 등급 결정의 실무 사례를 예시한다. 각 기업의 실정에 적합한 리스크 관리 실무정립에 유용한 참고 지침이 될 것이다.

리스크 등급결정 사례: 5 등급 결정 (강기승. 리스크 관리실제, 2024.11, p.73.)

영국의 A대학에서는 발생가능성과 영향도를 모두 5등급으로 구분하고 이에 따라 총위험을 25점 만점 기준으로 리스크 등급을 분류하고 있다. 대학은 적정한 수의 신입생을 유치하는데 실패하는 리스크와 학교 운영자금 확보를 위한 외부 용역사업 유치에 실패하는 리스크를 고위험으로 분류하고 있다. 학업성취도의 공정한 평가에 실패하거나 전산시스템의 가동이 중단되는 것을 中위험으로 분류하고 있다.

<표 1> 영국 A 대학의 리스크 등급 결정 사례

리스크 번호	업무명	리스크	발생가능성 (likelihood)	영향도* (materiality)	총위험 (total risk)	리스크 등급
1	학교행정 전략	적정수의 학생을 확보 유지하는데 실패	4	5	20	고
2	기획관리	자금 확보를 위한 외부 용역사업 획득 실패	3	5	15	고
3	학사운영	학업성취도의 공정한 평가 실패	2	5	10	중
4	전산운영	전산 시스템 장애	2	5	10	중

* 영향도를 materiality로 사용하고 있음

리스크 등급 : 주관적 방식에 의한 결정

총위험을 리스크 사건 발생가능성과 영향도를 주관적으로 Low, Medium, High 3단계로 평가하는 경우의 예시이다. 예들 들면, 사건 발생가능성이 High(3)이고 영향도도 High(3)이면 총리스크는 HH(9)로 평가된다.

<표 2> 주관적 방식에 의한 리스크 등급 결정 사례(예시)

	영향도			
발 생 가능성		Low	Medium	High
	Low	LL = 1	LM = 3	LH = 6
	Medium	ML = 2	MM = 5	MH = 8
	High	HL = 4	HM = 7	HH = 9

低위험 中위험 高위험

영국 내부감사협회의 리스크 등급 결정 : 예시

영국내부감사협회(IIA UK & Ireland)에서 주관적 방식에 의한 리스크 등급 결정 사례를 예시적으로 적용해 본 것이다.

(1) 영향도는 예시하면 다음과 같이 평가한 것이다.

C(Critical, 연간 10만 파운드 초과 손실 가능성 (1.8억원 초과)

S(Significant, 연간 10만 파운드 이하 1만 파운드 이상 손실 발생 가능성 (1.8억~19백만원)

N(Noticeable, 연간 1만 파운드 미만 손실 발생 가능성 (18백만원 미만)

(2) 발생가능성: High(H), Medium(M), Low(L) 평가함.

<표 3> 리스크 분석 결과 예시

직무 목표	리스크	영향도	발생 가능성	총위험	리스크 등급
고객기반(customer base) 확대를 통한 매출 증대	경쟁 제품 등장에 따른 고객 이탈	C	H	9	고
	불법행위 등에 의한 평판 악화로 고객 상실	C	H	9	고

매출총이익 확보를 위한 원가 절감 및 합리적인 가격 설정	경쟁 심화 및/또는 환율 상승으로 인한 재료비 원가 상승	C	H	9	중
	판매가격 설정 오류	S	L	2	저
순이익 확보를 위한 기타 원가 절감	인건비 상승	S	H	6	중
	물류비 상승	S	H	6	중
안정적인 현금흐름 유지	적정 수준의 제품 수량 확보 지연	C	M	6	고
제품 납기 준수	택배 납기 준수 실패	C	M	6	고
	유능한 물류 관리 직원 확보 실패	N	M	2	저

중소기업에 적용을 위한 tips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초기에는 주관적 방식에 의한 총위험을 리스크 사건 발생가능성과 영향도를 주관적으로 Low, Medium, High 3단계로 평가하는 방식을 제안한다. 리스크 등급의 정교성보다는 우리 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전사적 리스크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다음에는 리스크 우선순위가 결정된 기업의 리스크 관리정책에 따른 리스크 관리(risk treatment) 실무사례를 정리해 볼 예정이다.

고용증대세액공제 해당 여부

Q 제조업을 운영하시던 부친이 폐업하고 아들이 같은 사업장에서 동일한 업종으로 신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친이 운영하던 사업장에 근무하던 직원 전부를 아들 사업장에서 채용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신규 사업자등록을 한 아들이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A 폐업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종전 직원을 그대로 다시 채용하는 경우에는 고용의 증가가 없으므로 고용증대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직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였으나, 현실적인 퇴직이 아닌경우 세법상 처리 문의

Q 아래 국세청Q&A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 Q. 직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였으나, 현실적인 퇴직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ㅇ 해당금액에 대한 세법상 처리는 어떻게 하는것인지요?
>
> A. 법인이 현식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를 손금산입한 경우, 해당임원 또는 직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이를 업무부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유보)하고 인정이자를 게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 법인, 서면2팀-364(2008.02.29)

당사의 경우 근로자에게 해마다 dc로 지급하고 퇴직금으로 비용처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손금불산입과는 무관한 것인지요? 즉 무관하지 않고 위 사례데로 인정이자 계산을 하는 것이라고하면 해마다 다시 계산해야하는 것인지 ? 아님 당해에 기 지급한 모든 퇴직금을 소급하여 인정이자 계산하는 것인지요?

A 임직원의 퇴직시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연금 등에 가입하고 불입하는 금액은 임직원에게 직접 퇴직급여를 지급한 것이 아니므로 해당 국세청유권해석과는 무관한 내용입니다.

양도담보부채무변제

Q 당사는 법인이고 채권자로써,금전소비대차계약한 채무변제 불이행으로 채무자A의 양도담보물을 양도담보부채무변제계약공정을 통해 소유권 이전한 상태입니다.
위와 같은 거래가 발생한 경우 자산, 부채의 처리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양도담보된 기계장치의 경우 취득년도가 2000년대로 표시되는데 내용연수 문의(기계장치 10년 정액 또는 경제적 실질반영 등)
2. 양도담보부채무로 소유권 이전한 기계장치 계정문의(신규취득자산과 동일하게 기계장치로 처리)
3. 미변제 채무와 양도자산의 변제 회계처리 문의(양도자산 채무/미변제 채무 변제 처리가 맞는지)
4. 혹시 위 사례의 경우 별도로 추가될 회계처리가 있는지

A 채무변제불이행에 따라 양도담보물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온 경우 귀사의 의견대로 신규자산과 동일하게 기계장치로 처리하면 되며, 내용연수는 중고자산 취득과 동일하게 처리하시면 되는데 중고자산도 기준내용연수 적용이 원칙이나 중고자산이 기준내용연수의 50% 이상이 경과된 경우에는 수정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촉탁계약직 채용시 정부지원금 수령 시 회계처리

Q 회사에서 촉탁계약직을 채용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국가에서 주는 정부지원금을 300만원/인당 수령하였습니다.
회사가 받는 정부지원금 수령액에 대해 회계처리 시 잡이익처리를 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촉탁계약직 분들의 급여비용에서 차감해도 되나요?

A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받는 반환의무없는 지원금은 영업외이익이나 잡이익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면세사업자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상담실 백종훈 차장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아야 한다. 주고받는 세금계산서는 차후 과세자 입장에서는 부가가치세액 산출은 물론 소득 · 법인세 과세의 기초자료가 되며 국세청의 자동검증자료가 된다. 납세자입장에서는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는 물론이고 개인사업자의 필요경비나 법인의 손금인정에 증빙자료가 된다.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면세사업자의 경우는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발급한 계산서가 소득 · 법인세 등 과세자료의 기초자료가 된다. 물론 부가세면세사업자는 부가세 납부의무가 없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지만 매입자료는 받을 수가 있다. 이때 매입세금계산서는 과세업자와는 다르게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는 없으나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는 제출해야 한다. 제출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가 적용된다.

과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면세사업자는 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세금계산서란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증빙서류를 말한다.

공급하는 자의 입장에서는 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를 다음 거래단계에 전가시키는 법적장치이다. 반면에 공급받는 자의 입장에서는 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필수적인 증빙서류이다.

즉,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자료로서의 기능, 매입세액공제 증빙의 기능은 물론 소득 · 법인세법의 근거과세자료로서 기능, 각종 비용인정 증빙으로서의 기능과 각종 공제증빙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또한 송장, 청구서, 대금영수증 등의 부수적인 역할도 수행한다.

따라서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의 올바른 수수가 이루어져야 매출세액에서 거래징수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부가가치세제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이다.

이러한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발급하여야 한다. 단, 공급시기 도래 전에 거래대금의 전부나 일부를 수수하면서 발급하는 경우는 발급하는 때를 재화 등의 공급시기로 본다.

예외적으로 공급받는 자가 계속적인 거래처인 경우 발급편의를 위해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사업자는 매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만약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세금계산서"에서 "세금"이란 부가가치세를 말하는데 그냥 계산서하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발행하는 증빙서류로서 매출부가세가 없다. 결국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며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면세사업자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의해 계산서를 발행하며, 매년 2월10일까지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면 된다.

면세사업자라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는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면세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규정은 없으나, 매입세금계산서의 제출의무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매입과 관련해서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부가가치세 일반사업자와 같이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한다. 즉,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누구라도(면세사업자라도)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기간 종료후 25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면세사업자라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이다. 다만, 부가가치세가산세는 과세업자에게만 적용되므로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는 없다. 따라서 면세사업자도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를 부가세 확정신고기간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때 제출하지 않더라도 법인세법 제120조의3 규정에 따라 1년에 한번(매년 2월 10일) 제출하면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만약 이때에도 제출하지 않으면 법인세법 제75조의8제1항에 따라 미제출액×0.5%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물론 면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상 확정신고기간에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에는 2월 10일까지 제출하지 않더라도 제출한 것으로 본다.

365

매일절세재무요점

- 안건조세총서, 기업경영회계·세무, 법인세법상세해설서
- 경제신문자료와 공공기관발표자료 등

月요 올해 달라진 연말정산 공제 항목

자녀세액공제 확대	자녀 2명 30만원 → 35만원, 셋째 자녀부터 인당 30만원 추가
출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10만원 → 20만원
영유아 의료비용 공제	만 6세 이하 한도 폐지
산후조리비용 공제	200만원 한도 내 모든 근로자 적용
월세 세액공제 기준	총급여 7000만원 → 8000만원 이하
주택청약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한도	240만원 → 300만원

火요 개인형 퇴직연금(IRP) 중도 인출이 가능한 사유 및 그에 따른 세금

	퇴직금	운용수익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연금소득세 (퇴직소득세의 70%)	연금소득세 (3.3~5.5%)
개인회생 절차가 개시되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천재지변을 당한 경우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퇴직소득세	기타소득세 (16.5%)
사회적 재난을 당한 경우		

소득세 물가 연동제 운용하는 주요국

	물가연동지수	물가연동주기	특징
미국	생계비지수 (cost of living index)	1년	물가 상승분 2024년 5.4%, 2023년 7.1% 반영
캐나다	소비자 물가지수 (CPI)	1년	• 1986년~1999년까지 물가상승률 3% 초과 시에만 조정 • 2024년 4.7%, 2023년 6.3% 반
영국	소비자 물가지수 (CPI)	1년 원칙(2025년~2026년까지 연동 중단)	• 의회 예산안 심의 시 연동 여부 결정 • 최고세율 구간 물가 연동 ×
프랑스	소비자 물가지수 (CPI, 담배 제외)	1년	물가 상승분 2024년 4.8%, 2023년 5.4% 반영
뉴질랜드	소비자 물가지수 (CPI)	CPI 누적증가율 5% 이상 시 조정	과세표준 기준 금액은 물가연동제 도입×

자료 : 국회입법조사처

일반증여와 가업승계증여의 차이

일반 증여	계산구조	가업승계 증여
50억	증여재산	50억
5000만	증여공제	10억
49억5000만	과세표준	40억
10~50%	세율	10%
20억1500만	산출세액	4억

상대의 성격에 따른 설득법 6가지 ③

3. 지능이 높은 사람
- 강한 논거가 필요하다

지능이 높은 사람은 설득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모든 것에는 반드시 양면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 일방적인 설득에 거부감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실제로 텍사스 A&M대 낸시 로스 박사는 '지능지수와 설득 정도'에 대한 기존의 연구자료 45개를 수집해서 재분석했는데, 지능지수가 높을수록 설득하기 어려워진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또 지능지수가 높은 사람을 설득할 때는 강한 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매사추세츠대 이글리 교수는 "양치질을 하지 말자"는 설득 메시지를 담은 테이프를 만들었는데, 이 때 "양치질은 귀찮기 때문"이라는 약한 논거와 "양치질은 이에 부담을 주고 이의 표면을 마모시킨다", "양치질을 세게 하는 사람은 가볍게 하는 사람에 비해 1.4배나 구강암에 걸리기 쉽다"는 강한 논거로 설득했을 때, 지능지수가 높은 사람은 강한 논거에 더 잘 설득당한다는 것을 밝혀냈다.

최 신 판 례 예 규

Marketing Tax consulting

비디오 아트작품을 양도하는 경우는
서화·골동품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기타소득과세대상 아니고 일반사업소득임

양도시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서화·골동품의 범위에 "비디오 아트"는 포함되지 아니함

서면법규소득-2543, 2024.01.11

질 의

- 질의인은 사업자가 아닌 개인으로부터 백남준 작가의 비디오 아트 작품을 취득하였으며, 해당 작품의 양도가액은 6천만원을 초과함
- "비디오 아트"란 비디오를 표현 수단으로 하는 영상 예술, 조현 표현의 활동을 비디오테이프에 담아 그것을 영상으로 발표함으로써 작가의 조형 활동의 과정을 전달하려는 것을 의미함(국립국어원 표준대국어사전 참조)

질의

- 백남준 작가의 "비디오 아트" 작품이 양도시 기타소득 과세대상인 서화 골동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 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아래의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6, 2024.01.0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6, 2024.01.03.

양도시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서화 · 골동품의 범위에 "비디오 아트"가 포함되는지 여부

(제1안) 포함됨

(제2안) 포함되지 않음

회신 : 제2안이 타당합니다.

2022사업연도에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은 법인이, 2023사업연도에는 해당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고 법인법§29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사전법규법인-3, 2024.04.11

질 의

- 신청법인은 비영리 내국법인으로, 2022사업연도에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았으며

- 2023사업연도에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고 법인법 29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받고자 함

질의

- 「2022사업연도에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은 법인」이, 2023사업연도에는 해당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고 법인법 29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회 신

2022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은 비영리내국법인이 2023사업연도에 해당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고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대주주여부 판정시 조합원계정에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를 포함하는 것이며, 이 때 우리사주는 「근로복지기본법」 제43조 및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예탁기간의 구분과 관계없이 소유주식에 포함하여 대주주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서면법규재산-474, 2024.04.22

질 의

- 일정기간 동안 인출이 불가능한 우리사주조합원의 지분이 상장주식 대주주 요건 판정 시 포함되는지 여부

회 신

「소득세법」 제94조에 따른 대주주 여부를 판정할 때, 조합원이 조합원계정에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의 주주 1인과 주권상장법인기타주주 및 주권비상장법인기타주주의 소유주식에 포함되는 것이며, 이 때 우리사주는 「근로복지기본법」 제43조 및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3조의 예탁기간 구분에 따른 인출 가능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주식에 포함하여 대주주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노동조합이 반환의무 없는 조합비를 조합원에게 환급하는 경우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법규소득-1609, 2024.01.16

질 의

- 노동조합이 반환의무 없는 조합비를 조합원에게 환급하는 경우의 소득구분 등

회 신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조합비를 납부하고 「소득세법」제59조의4제4항에 따른 기부금 세액공제(이하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로서 규약 등에 의할 때 조합원이 납부한 조합비의 반환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노동조합이 조합원에게 가입연수 등에 따라 조합비 환급 명목으로 일정액(이하 "쟁점금원")을 지급하는 경우에,

1. 쟁점금원은 조합원의 「소득세법」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 제13호 또는 제1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소득세법」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등 기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쟁점금원이 조합원의 「소득세법」제1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이 조합원에게 쟁점금원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3. 조합원이 쟁점금원을 지급받는 경우에도 조합비 납부에 따라 이미 적용받은 기부금 세액공제에는 영향이 없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자료' 따로 제출할 필요 없어요… 30일까지 자동제공 이용신청

국세청(청장 강민수)이 오는 30일까지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서비스 이용 신청을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서비스'는 근로자가 회사에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제출하기 위해 연말정산 자료를 받을 필요 없이 일괄제공 신청을 하면 국세청이 근로자 연말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다.

지난해 이용회사는 7만개, 이용 근로자는 250만명이 이용했다.

회사는 30일까지 올해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서비스 신청자를 정해진 서식에 입력해 국세청에 제출하면 된다.

근로자는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홈택스(또는 손택스)에서 현재 근무 중인 회사와 국세청이 회사에 제공하는 연말정산 자료를 확인(동의)하면 된다.

국세청은 올해 더 많은 근로자들이 일괄제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사가 업무 일정에 맞추어 일괄제공 받을 날짜를 1월 17일과 1월 20일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1월 20일부터 순차 제공했었다.

국세청 측은 신고·납세 도움자료와 비대면 서비스 확대를 통해 이용자 중심의 납세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기업 밸류업펀드' 투자 스타트… "연내 3000억 추가 조성"

한국거래소가 유관기관과 함께 조성한 '기업 밸류업 펀드'가 본격적인 투자에 돌입한다.

20일 거래소는 기업 밸류업 펀드의 하위펀드 설정을 완료하고 오는 21일부터 투자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투자 대상자는 밸류업 지수 상장지수펀드(ETF)와 지수 구성 및 지수 미편입 밸류업 공시 기업이다.

앞서 거래소와 한국증권금융, 한국예탁결제원, 한국금융투자협회, 코스콤 등 증권 유관기관 5개사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지난 4일 총 2000억원 규모의 민간연기금 투자풀을 활용한 간접펀드인 기업 밸류업 펀드를 조성했다. 거래소와 유관기관 5곳이 1000억원을 투입하고, 민간 매칭 자금 1000억원이 합해졌다.

거래소는 유관기관들과 3000억원 규모의 기업 밸류업 펀드를 추가 조성할 계획이다. 밸류업 투자문화 조기 정착을 위해 연내 조성을 목표로 신속히 추진한다. 이번에도 기관과 민간이 각각 1500억원씩 투입하며, 이로써 기업 밸류업 펀드 규모는 총 5000억원으로 늘어난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펀드 추가 조성은 밸류업 관련 투자문화 확산 및 증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거래소를 포함한 증권 유관기관은 밸류업 프로그램이 탄력을 얻을 수 있도록 향후에도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내년도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의견청취 '12월 4일까지'

국세청(청장 강민수)이 14일부터 내달 4일까지 2025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안을 공고하고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는다.

기준시가안 사전 열람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과 홈택스(www.hometax.go.kr) 배너를 통해 접근 가능하다.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온라인 또는 관할 세무서로 직접 방문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출 의견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수용 여부 검토 후 결과를 개별 통지하고, 최종 기준시가는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12월 31일 고시할 예정이다.

이번 고시물량은 240만호(오피스텔 128만호?상가 112만호)로 전년 대비 5.1% 늘었다.

고시 대상은 전국 오피스텔 및 수도권, 5대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일정 규모(3,000㎡ 또는 100호) 이상의 구분 소유된 상업용 건물이다.

기준시가는 대체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오피스텔이 전년보다 0.3% 하락한 반면, 상업용 건물은 0.5% 상승할 전망이다.

전반적으로 보면 서울 지역 외 나머지 지역은 대체로 소폭 하락세를 보였으나, 오피스텔의 경우 대도시 중에선 인천과 대구, 광역지자체 중에선 충남과 제주의 하락 폭이 컸다.

상업용 건물은 소폭의 보합세 구간에 들어섰다.

따라서 서울은 지난해와 비슷하게 세금(재산세 등 보유세)이 책정될 것으로 보이며, 나머지 지역들은 작년보다 대체로 소폭 세금이 깎일 것으로 전망된다.

연말정산 주요 공제 항목별 계산 사례

- 국세청, 2024. 11

1. 비과세 근로소득

□ 근로소득자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 사회정책적 입장이나 과세기술상 필요에 의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을 의미

- 실비변상적 급여(월 20만 원 이내의 자기차량운전보조금 등)
- 국외근로소득(월 100만 원 또는 300만 원 이내)
-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연장근로 등으로 인하여 받는 급여(연 240만 원 이내)
- 현물식사 또는 월 20만 원 이하 식사대
- 출산수당 또는 6세 이하의 자녀 보육수당(월 10만 원 이내)
-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 휴가 급여 등
- 연 500만 원 이하의 직무발명보상금

사례 1	매월 급식수당으로 25만 원을 지급받는 경우 월 비과세되는 금액은?

◊ 회사로부터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고 식사대로 매월 25만원을 지급받는 경우 20만 원은 비과세하고 나머지 5만원은 과세

☞ 위 근로자의 월 비과세되는 금액은 20만 원 입니다.

사례 2	두 회사를 다니면서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A회사 30만 원, B회사 15만 원을 받은 경우 비과세되는 금액은?

◊ 지급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에서 비과세 적용

☞ 위 근로자의 비과세되는 금액은 35만 원 입니다.(A회사 20만원, B회사 15만 원)

사례 3	국외 건설현장 근로자의 월급여액이 다음과 같은 경우 국외근로소득 비과세금액은? 1월 ~ 3월 : 월 270만 원, 4월~ 6월 : 월 350만 원 7월 ~ 9월 : 월 390만 원, 10월~12월 : 월 240만 원

◊ 월 300만원 비과세 한도가 적용되며 300만 원에 미달하는 금액은 이월적용하지 않음

◊ (1월～3월 : 270만 원 × 3) + (4월～9월 : 300만 원 × 6) + (10월～12월 : 240만 원 × 3)

☞ 위 근로자의 비과세 국외근로소득은 3,330만 원 입니다.

사례 4	생산직근로자의 12월 급여가 다음과 같은 경우 월정액급여 및 비과세 금액은? (1~11월까지 생산직근로자로서 연장근로수당 등의 비과세 금액 200만 원을 공제 받음) ① 기본급 140만 원 ⑤ 야간근로수당 10만 원 ② 가족수당(매월 지급) 6만 원 ⑥ 휴일근로수당 5만 원 ③ 부정기적 상여 100만 원 ⑦ 식대(현물식사를 제공받지 않음) 23만 원 ④ 연장근로수당 10만 원

☞ 비과세 금액 : 45만 원

※ ④ 연장근로수당 10만 원, ⑤ 야간근로수당 10만 원, ⑥ 휴일근로수당 5만 원, ⑦ 식대 20만 원

☞ 월정액급여 : 169만 원

<월정액급여 계산>

☞ 상여 등 부정기적 급여를 차감한 급여의 총액 : 194만 원

* ① ~ ⑦ 총 합계액 294만 원 – 100만 원(③ 상여) = 194만 원

** ⑦ 식대(23만 원)는 실비변상적인 급여가 아니므로 월정액 급여 계산 시 포함됨

◊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수당 : 25만 원

월정액급여 = 부정기적 급여를 차감한 급여의 총액 - 야간근로수당 등

= 194만 원 - 25만 원 = 169만 원

☞ 위 근로자의 12월 비과세 금액은 45만 원 이고 월정액 급여는 169만 원 입니다.

※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요건

- 월정액급여 210만 원 이하 요건과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3천만 원 이하 요건을 동시에 충족

<야간근로수당 등의 비과세 대상 급여 기준 적용방법>

월정액급여 = 급여의 총액 - 야간근로 수당 등

① 급여의 총액은 매월 지급받는 봉급·급료·보수·임금·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의 합

계액(다만,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실비변상적인 급여 제외)
② 비과세되는 식사대는 실비변상적인 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월정액급여 계산시 차감하지 않도록 주의
③ 상여금을 매월 급여항목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월정액급여 계산시 차감하지 아니함
※ 상여금지급규정에 의하여 2개월에 한번씩 지급받는 상여금은 부정기적인 급여에 해당
④ 야간근로수당 등 크기가 매월 변동되더라도 매월 계산되는 급여항목인 경우에는 급여총액에 포함
⑤ 임금협상 결과 1월분부터 소급 인상하기로 함에 따라 이미 지급된 급여와 인상금액과의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하는 경우 월정액급여의 계산은 1월분부터 인상된 금액으로 재계산

2. 인적공제(기본공제와 추가공제)

□ 근로자의 부양가족 상황에 따라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해주고

○ 거주자 본인, 거주자가 부양하고 있는 가족 중 공제요건을 충족하는 가족에 대해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두종류가 있음

- 기본공제 : 근로자 본인,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1명당 연 150만 원을 공제

<기본공제 요건>

부양가족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위탁아동	수급자
나이요건	60세 이상 ('63.12.31.이전)	20세 이하 ('03.1.1.이후)	20세 이하 60세 이상	해당과세기간 6개월이상 직접 양육	제한없음

- 추가공제 :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공제 요건>

요건	경로우대 (70세 이상)	장애인	부녀자 (부양/기혼)	한부모*
공제금액	100만 원	20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 한부모 공제는 부녀자공제와 중복 적용 배제(중복시 한부모 공제 적용)

사례 1	근로자의 부양가족으로 배우자, 자녀 3명(만 20세 자녀 1명과 20세 미만 자녀 2명), 60세 이상 직계존속 2명이 있으며, 근로자 본인 외에는 소득이 없는 경우 기본공제 금액은?

◊ 공제대상 가족수 : 본인, 배우자, 자녀 3명, 직계존속 2명

☞ 위 근로자의 기본공제 금액은 1,050만 원 입니다. [본인 포함 공제대상가족(7명) × 150만 원]

※ 해당 과세기간 중에 만 20세에 도달하더라도 기본공제 가능

사례 2	근로자가 부양하고 있는 소득이 없는 아버지가 60세 미만이고 장애인인 경우 아버지에 대한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금액은?

◊ 장애인은 소득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만 충족하면 나이에 관계없이 인적공제가 가능하며 기본공제와 장애인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위 근로자의 기본공제 금액은 150만 원, 추가공제 금액은 200만 원 입니다.

사례 3	근로자의 부양가족별 소득금액이 다음과 같을 때 기본공제대상자 수는 ? · 본인 총급여액 5,000만 원 · 배우자 총급여액 500만 원 · 만 20세 장녀 사업소득금액 110만 원 · 만 18세 장남 이자수입 100만 원 · 만 60세 부친 식량작물재배업 소득 500만 원

◊ 기본공제대상자 본인, 배우자, 만 18세 장남, 만 60세 부친

☞ 위 근로자의 기본공제 대상자는 4명입니다. [본인 포함 공제대상가족(4명)×150만 원]

* 수입금액 10억 이하인 작물재배업은 비과세 사업소득 (소득세법 제12조 제2호 바목)

3.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사용처별·결제수단별 소득공제율

결제수단 및 사용처별	공 제 율
◊ 신용카드	15%
◊ 직불·선불카드·현금영수증	30%
◊ 도서·공연·영화·박물관·미술관('23.4.1. ~ 12.31. 대중교통 사용분)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만 해당	30%(40%)
◊ 전통시장 사용분 ('23.4.1. ~ 12.31. 전통시장 사용분)	40%(50%)
◊ 대중교통 사용분	80%

※ 영화관람료는 2023.7.1.이후 사용분부터 공제가능

□ 공제한도 및 최저 사용금액

○ (공제한도) 급여수준별 공제한도 중 적은금액

구 분	공 제 한 도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	300만원
총급여 7천만 원 초과자	250만원

○ (추가 공제한도) 아래 항목별로 각 100만 원 한도 추가

항 목	추가공제한도	
	7천만원 이하자	7천만원 초과자
전통시장	300만원	200만원
대중교통		
도서·공연·영화·박물관·미술관		

○ (최저 사용금액)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총급여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최저사용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공제비율을 곱하여 공제금액을 계산

사례 1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최저 사용금액(총급여의 25%) 이상

◊ 총급여 68백만 원인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은?

▷ 올해 신용카드 소득공제금액은 소득공제 추가분 3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600만 원입니다.

※「예상세액 계산하기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자동계산 됩니다.

[2023년 신용카드 등 사용 현황]

구 분	사 용 액
신용카드	2,500만원 (대중교통 300만원 포함)
현금영수증	1,300만원 (전통시장 400만원* 포함)
체크카드	800만원 (도서공연 200만원** 포함)
총 계	4,600만원

1) 전통시장 사용액 중 '23년 1월~3월 사용금액은 120만원, 4월~12월 사용금액은 280만원
2) 도서·공연 사용액 중 '23년 1월~3월 사용금액은 50만원, 4월~12월 사용금액은 150만원

[소득공제금액 계산]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4,600만원으로 최저 사용금액(총급여의 25%)
= 6,800만 원 × 25% = 1,700만 원을 초과하므로 소득공제 가능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따른 소득공제금액: 600만 원 (1 + 2)

1. 기본공제 금액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1,028만원(한도 300만원)
① 전통시장 사용분 = (120만원 × 40%) + (280만원 × 50%) = 188만원
② 대중교통 사용분 = 300만원 × 80% = 240만원
③ 도서·공연 등 사용분 = (50만원 × 30%) + (150만원 × 40%) = 75만원
④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 등 사용분(전통시장・대중교통 이용분 제외)
= (1,300만원-400만원) × 30% + (800만원-200만원) × 30% = 450만원
⑤ 신용카드사용분 = (2,500만원-300만원) × 15% = 330만원
⑥ 최저사용금액에 해당하는 소득공제 금액(신용카드 사용금액 ≥ 최저사용금액 인 경우)
= 최저사용금액(1,700만원) × 15% = 255만원

2. 추가한도 적용에 따른 소득공제금액 = 300만 원*

* Min{한도초과액(1,028만 원 - 300만 원), (188만원 + 240만원 + 75만원), 300만원} = 300만원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추가공제 한도 300만원 적용

사례 2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최저 사용금액(총급여의 25%) 이상

◊ 총급여 9천만 원인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은?

▷ 올해 신용카드 소득공제금액은 소득공제 추가분 150만 원을 포함하여 총 450만 원입니다.

※「예상세액 계산하기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자동계산 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 현황]

구 분	사 용 액
신용카드	3,100만원 (대중교통 200만원 포함)
현금영수증	1,800만원 (전통시장 350만원1)) 포함)
체크카드	900만원 (도서공연 270만원2)) 포함)
총 계	5,800만원

1) 전통시장 사용액 중 '23년 1월~3월 사용금액은 90만원, 4월~12월 사용금액은 260만원

2) 도서·공연 사용액 중 '23년 1월~3월 사용금액은 70만원, 4월~12월 사용금액은 200만원

[소득공제금액 계산]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5,800만원으로 최저 사용금액(총급여의 25%)
= 9,000만 원 × 25% = 2,250만 원을 초과하므로 소득공제 가능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따른 소득공제금액: 450만 원 (1 + 2)

1. 기본공제 금액
: ① + ② + ③ + ④ - ⑤ = 1,212.5만원(한도 250만원)
① 전통시장 사용분 = (90만원 × 40%) + (260만원 × 50%) = 166만원
② 대중교통 사용분 = 200만원 × 80% = 160만원
③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 등 사용분(전통시장・대중교통 이용분 제외)
= (1,800만원-350만원) × 30% + (1,450만원-270만원) × 30% = 789만원
④ 신용카드사용분 = (3,100만원-200만원) × 15% = 435만원
⑤ 최저사용금액에 해당하는 소득공제 금액 (신용카드 사용금액 ≥ 최저사용금액 인 경우)
= 최저사용금액(2,250만원) × 15% = 337.5만원

2. 추가한도 적용에 따른 소득공제금액 = 200만 원*

* Min{한도초과액(1,212.5만 원 - 300만 원), (166만원 + 160만원), 200만원} = 200만원

*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의 추가공제 한도 200만원 적용

4. 자녀 세액공제

□ 기본공제대상 자녀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공제대상 자녀 및 손자녀로 8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

자녀의 수		세 액 공 제 금 액
1명	⇨	연 15만 원
2명		연 30만 원
3명 이상	⇨	연 30만 원 + 2명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 원

* 3명 : 60만 원, 4명 : 90만 원, 5명 : 120만 원

□ 출산·입양 공제대상 자녀

○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인 경우 연 70만 원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

* 자녀장려금은 자녀 세액공제(기본공제, 출산·입양 공제)와 중복적용 배제

사례 1	3자녀(22세, 10세, 3세)가 있는 경우 자녀세액 공제금액은?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 공제대상 자녀 중 8세 이상 자녀의 수가 1명인 경우 연 15만 원을 공제합니다.

☞ 위 근로자의 자녀세액 공제금액은 15만 원입니다.

* 22세 자녀는 기본공제 대상 아님

사례 2	4자녀(5세, 8세, 10세, 13세)가 있는 경우 자녀세액 공제금액은?

◊ 기본공제가 적용되는 자녀 중 8세 이상이 3명이므로,

☞ 위 근로자의 자녀세액 공제금액은 60만 원 입니다.

사례 3	1자녀(5세)가 있는 사람이 2023년도에 둘째 자녀를 출산한 경우 자녀세액 공제금액은 얼마인가요?

◊ 8세 이상인 기본공제대상 자녀는 없으나 둘째 자녀가 출산 공제대상이므로

☞ 위 근로자의 자녀세액 공제금액은 50만 원 입니다.

5. 연금계좌 세액공제

□ 연금계좌 세액공제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①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등 과세가 이연된 소득
② 연금계좌에서 다른 연금계좌로 계약을 이전함으로써 납입되는 금액

<총급여액별 공제비율>

총급여액 (종합소득금액)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한도 (퇴직연금 합산시 한도)	공제율
55백만원 이하 (45백만원 이하)	600만원 (900만원)	15%
55백만원 초과 (45백만원 초과)		12%

○ 세액공제대상 연금계좌 납입액 : 아래의 연금계좌에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하는 합계액을 연 900만 원을 한도로 하여 세액공제 적용(연금저축계좌 납입액 한도는 연 600만원)

- 연금저축계좌 : 금융회사 등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연금저축”이라는 명칭으로 설정하는 계좌
- 퇴직연금계좌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와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중소기업퇴직연금 또는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해 설정하는 계좌(확정기여형퇴직연금 사용자부담금은 제외)

사례 1	연금계좌 세액공제 금액은? (총급여 5천 5백만 원 이하)

(단위 : 만원)

상 황	연금저축납입액 (600만 원 한도)	퇴직연금 납입액	공제금액 (900만 원 한도)	공제비율	세액공제액
1	0	700	700	15%	105
2	200	500	700	15%	105
3	500	200	700	15%	105
4	700	0	600	15%	90

사례 2	연금계좌 세액공제 금액은? (총급여 5천 5백만 원 초과)

(단위 : 만원)

상 황	연금저축납입액 (600만 원 한도)	퇴직연금 납입액	공제금액 (900만 원 한도)	공제비율	세액공제액
1	0	700	700	12%	84
2	200	500	700	12%	84
3	600	350	900	12%	108
4	700	0	600	12%	72

6. 특별 세액공제

1 보험료 세액공제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해당 과세기간에 보험료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및 세액공제율>

구 분	공 제 항 목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세액공제율
보장성보험	생명보험, 상해보험 등의 보장성보험료	연 100만 원	12%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	연 100만 원	15%

사례 1	연말정산시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가 계약자인 자동차종합보험(피보험자 본인)의 보험료 납입영수증(보험료 110만 원)을 회사에 제출하였을 경우 보험료 세액공제액은?

◊ 세액공제 대상금액 :100만 원(한도 100만 원)
◊ 보험료 세액공제액 :100만 원×12% = 12만 원
☞ 위 근로자의 보험료 세액공제액은 12만 원 입니다.

사례 2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 A에 대한 보장성보험료 납입액 120만 원과 자녀 B(장애인)의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 납입액이 200만 원인 경우 보험료 세액공제액은?

◊ 세액공제 대상금액 : 200만 원 = 100만 원 (일반보장성보험) + 100만 원(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100만 원)
◊ 보험료 세액공제액 :(100만 원 × 12%) + (100만 원 × 15%) = 27만 원
☞ 위 근로자의 보험료 세액공제액은 27만 원 입니다.

2 의료비 세액공제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의료비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
-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및 세액공제율>

구 분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세액공제율
일반 기본공제대상자 의료비	연 700만 원 한도	15%
본인·65세이상·장애인 의료비	한도 없음	15%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한도 없음	20%
난임시술비	한도 없음	30%

※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자의 산후조리원 비용 : 출산 1회당 200만 원 한도

사례 1	총급여 6천만 원인 근로자가 ①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을 위하여 의료비 110만 원, ②미숙아 자녀를 위하여 의료비 200만 원을 지급한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금액은?

◊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을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에 대해 15%(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20%, 난임시술비 30%)의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공제합니다.
◊ 총급여액의 3% 해당금액 : 180만 원(총급여액의 3% = 6천만 원 × 3%)
◊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금액 :130만 원 (310만원 – 180만원)
의료비 총 사용액 : 310만원 (미숙아 2백만원+ 부양가족 110만원)
공제불가 금액 = 총급여의 3% = 180만원(부양가족 110만원 + 미숙아 70만원)
☞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금액은 130만원입니다.

사례 2	총급여 4천만 원 근로자가 본인 등 의료비 1천만 원, 일반 기본공제 대상자 의료비 100만 원일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액은?

◊ 총급여액의 3% 해당금액 : 120만 원(총급여액의 3% = 4천만 원 × 3%)
◊ 일반 기본공제대상자 의료비 공제 대상 : 100만 원 - 120만 원 = △ 20 만원
◊ 본인 등 의료비 공제 대상 : 980만 원(1천만 원 - 20만 원)
◊ 의료비 세액공제액 : 147만 원(980만 원 × 15%)
☞ 위 근로자의 의료비 세액공제금액은 147만 원 입니다.

사례 3	총급여 4천만 원 근로자가 본인 등 의료비 1천만 원, 일반 기본공제 대상자 의료비 100만 원일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액은? (당해연도 실손의료보험금 200만 원을 수령한 경우)

◊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를 말하므로,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1,100만 원)에서 실손보험금 수령액(200만 원)을 차감하여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를 계산합니다.
◊ 실손보험금 수령액 차감 후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 : 900만 원(본인 등 의료비)
◊ 총급여액의 3% 해당금액 : 120만 원(총급여액 4천만 원 × 3%)
◊ 본인 등 의료비 공제 대상 : 780만 원(900만 원 - 120만 원)
◊ 의료비 세액공제액 : 117만 원(780만 원 × 15%)
☞ 위 근로자의 의료비 세액공제금액은 117만 원 입니다.

사례 4	총급여액 5천만 원 근로자가 배우자를 위해 산후조리원 비용으로 300만 원을 지출한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금액은?

◊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을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에 대해 15%(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20%, 난임시술비 30%)의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공제합니다.
◊ 일반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7백만 원까지만 지출액으로 인정합니다.
◊ 총급여액의 3% = 50,000,000 × 3% = 1,500,000원
◊ 공제대상 의료비 = 2,000,000원 (산후조리원 비용은 2백만 원 한도)
◊ 세액공제 대상금액 = 2,000,000원 - 1,500,000원 = 500,000원
☞ 위 근로자의 의료비 세액공제금액은 500,000원 × 15% = 75,000원입니다.

사례 6	총급여액 6천만 원 근로자가 배우자를 위해 난임시술비 400만원, 산후조리원 비용으로 250만 원을 지출하고, 병원 치료비로 350만 원을 지출한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금액은?

◊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을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에 대해 15%(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20%, 난임시술비 30%)의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공제합니다.
◊ 일반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7백만 원까지만 지출액으로 인정합니다.
◊ 총급여액의 3% = 60,000,000 × 3% = 1,800,000원
◊ 공제대상 의료비 =

난임시술비	4,000,000원	(전액 공제대상)
산후조리원 비용	2,000,000원	(산후조리원 비용은 2백만 원 한도)
기타 의료비	3,500,000원	
합계	9,500,000원	

◊ 세액공제 대상금액 = 4,000,000원 + [(2,000,000+3,500,000) - 1,800,000] = 7,700,000원
☞ 위 근로자의 의료비 세액공제금액은 1,755,000원입니다.
* 난임시술비 4백만원 × 30% + 일반 의료비(산후조리원 포함) 370만원 × 15% = 1,755,000

사례 7	총급여액 8천만 원 근로자가 배우자를 위해 산후조리원 비용으로 200만 원을 지출하고, 병원 치료비로 300만 원을 지출한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금액은?

◊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을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에 대해 15%(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20%, 난임시술비 30%)의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공제합니다.
◊ 일반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7백만 원까지만 지출액으로 인정합니다.
◊ 총급여액의 3% = 80,000,000 × 3% = 2,400,000원
◊ 공제대상 의료비 =
산후조리원 비용 0원 (산후조리원 비용은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만 의료비로 인정받습니다.)
기타 의료비 3,000,000원
합계 3,000,000원
◊ 세액공제 대상금액 = 3,000,000원 - 2,400,000원 = 600,000원
☞ 위 근로자의 의료비 세액공제금액은 600,000원 × 15% = 90,000원입니다.

3 교육비 세액공제

○ 근로소득자가 근로자 본인, 기본공제대상자(나이 제한을 받지 않음)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구 분	세액공제 대상금액
근로자 본인	전 액
기본공제대상자(나이 제한 받지 않음)인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 및 입양자 ※ 직계존속은 제외	①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 초·중·고등학생 ⇒ 1명당 연 300만 원 한도 ② 대학생 ⇒ 1명당 연 900만 원 한도 ③ 대학원생 ⇒ 공제대상 아님
장애인 특수교육비 (직계존속 포함)	전 액

사례 1	근로자가 자녀 및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형제자매(소득 없음)를 위해 아래의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해당 연도 교육비 세액공제금액은?

구 분	내 용	금 액
본 인	대학원 (1학기 이상의 교육과정)	교육비 800만 원
자 녀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1명)	보육료 150만 원
	초등학생(1명)	학원 및 체육시설 수강료 120만 원
	중학생(1명)	중학교 수업료 300만 원
형제자매 (3명)	대학원생(처남, 26세)	1,000만 원
	대학생(처남, 22세)	900만 원
	대학생(동생, 25세)	750만 원

◊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금액(① + ② + ③) = 800만 원 + 450만 원 + 1,650만 원 = 2,900만 원

① 본인교육비 : 800만 원

② 자녀 교육비 : 450만 원(150만 원+300만 원)

* 취학전 자녀의 영유아 보육료 150만 원은 공제 대상이나, 초등학생의 학원·체육 시설 수강료는 공제 대상이 아님

③ 형제자매 교육비 : 1,650만 원

* 대학생 처남(공제한도 900만 원), 동생 750만 원 공제가능하나 대학원생 처남의 교육비는 공제 대상이 아님

☞ 위 근로자의 교육비 세액공제금액은 4,350,000원입니다.

* 교육비 세액공제금액 = 2,900만 원 × 15% = 435만 원

4 기부금 세액공제

○ 거주자 및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나이의 제한을 받지 않음)이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공제한도 내의 기부금에 대하여,

- 기부금액의 15%(1천만원 초과분은 30%)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

* '21년 ~ '22년 기부분은 세액공제율을 한시적으로 5%p 상향 적용

< 세액공제 대상과 공제율 >

<table>
<tr><th colspan="2">구 분</th><th>공 제 항 목</th><th>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th><th>공제율</th></tr>
<tr><td colspan="2">정치자금 기부금</td><td>정당기부 등</td><td>근로소득금액 전액</td><td>10만원 이하
(100/110)
10만원 초과
(15%)
3천만원 초과 (25%)</td></tr>
<tr><td colspan="2">고향사랑 기부금</td><td>지방자치단체 등</td><td>500만원</td><td>10만원 이하
(100/110)
10만원 초과
(15%)</td></tr>
<tr><td colspan="2">특례기부금</td><td>국방헌금, 위문금품 등</td><td>근로소득금액 전액</td><td rowspan="4">특례+우리사주 +일반
1천만원 이하
15%
1천만원 초과
30%</td></tr>
<tr><td colspan="2">우리사주조합기부금</td><td>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닌 사람이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td><td>근로소득금액의 30%</td></tr>
<tr><td rowspan="2">일 반 기부금</td><td>종교단체 외</td><td>지정된 사회·복지·문화·예술단체</td><td>근로소득금액의 30%</td></tr>
<tr><td>종교단체</td><td>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td><td>근로소득금액의 10%</td></tr>
</table>

* 특례기부금, 일반기부금은 10년간 이월공제 가능

** 정치자금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 우리사조합기부금은 이월공제 불가능

사례 1	근로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고향사랑기부금으로 20만 원을 기부한 경우 기부금 세액공제금액은?

◊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는 10만 원까지는 100/110을, 10만 원 초과분은 15%의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공제합니다.

◊ 10만 원 이하 = 10만 원 × 100/110 = 90,909원

◊ 10만 원 초과 = 10만 원 × 15% = 15,000원

◊ 정치자금기부금 세액공제액 = 90,909원 + 15,000원 = 105,909원

☞ 위 근로자의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금액은 105,909원입니다.

사례 2	근로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국방헌금으로 400만 원, 대학교기부금으로 900만 원, 종친회에 300만원을 기부한 경우 기부금 세액공제금액은?

◊ 기부금은 1천만원 이하는 15%, 1천만원 초과분은 30%의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공제합니다.

◊ 특례기부금(국방헌금) 세액공제 = 400만 원 × 15% = 60만 원

◊ 일반기부금(대학교) 세액공제 = (600만 원 × 15%) + (300만 원 × 30%) = 180만 원

◊ 기부금 세액공제액 = 60만원 + 180만원 = 240만 원

* 종친회에 기부한 금액은 세액공제 대상 아님

☞ 위 근로자의 기부금 세액공제금액은 240만 원입니다.

사례 3	총급여액 4천만 원(근로소득금액 2,875만 원) 근로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일반기부금(평생교육시설 기부금)으로 900만 원을 기부한 경우 기부금 세액공제금액 및 이월액은?

◊ 기부금 공제한도를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특례·일반기부금(2013년 이후)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공제합니다.

◊ 일반기부금 공제대상금액 한도 = 862.5만 원(근로소득금액 2,875만 원 × 30%)

◊ 일반기부금 세액공제 = 862.5만 원 × 15% = 1,293,750원

◊ 기부금 이월액 = 9백만 원 - 862.5만 원 = 375,000원

☞ 위 근로자의 일반기부금 세액공제금액은 1,293,750원이며, 해당 과세기간에 공제받지 못한 일반기부금 이월액은 375,000원입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관련 주요 문답

- 국세청, 2024. 11

1.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의의

[1-1] 금융소득 종합과세 제도란 무엇입니까?

○ 금융소득 종합과세란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을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누진세율)로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을 말합니다.

○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전체를 종합과세하는 것이나 종합과세 기준금액(2천만 원)을 기점으로 한 세부담의 급격한 증가문제를 보완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시 최소한 원천징수세율(14%) 이상의 세부담이 되도록 하기 위해 소득세법 제62조에 의한 비교과세방법에 따라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 기준금액 이하 금액은 형식적으로 종합과세되나 원천징수세율에 의해 산출세액을 계산하므로 실질적으로는 분리과세되는 것과 동일함

☞ 비교과세 산출세액 계산은 [7-1], [7-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금융회사 등에서의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따라서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있더라도 금융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국외금융소득과 같이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금융소득은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1-2] 금융소득이 있으면 모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까?

○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과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는 금융소득이 있는 사람 등은 금융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은 다음연도 5월 말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2023년 귀속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2024년 5월1일부터 5월31일(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소득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 연간 개인의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금융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 다만, 개인 합산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금융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금융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2.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되는 납세의무자

[2-1]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되는 납세의무자는 누구입니까?

○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되는 납세의무자는 거주자인 개인과 개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입니다.(법인은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관련이 없습니다)

- 법인 아닌 단체 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 : 동창회, 친목회, 종중, 등록되지 않은 종교기관 등)

[2-2] 비거주자의 금융소득은 어떻게 과세됩니까?

○ 비거주자의 금융소득은 해당 금융소득이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 및 부동산임대소득과 관련이 있는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비거주자가 국내사업장이 없거나(국내사업장이 있으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경우 포함) 부동산임대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여도 소득세가 종합과세되지 않습니다.

[2-3] 자녀의 금융소득도 부모의 금융소득에 합산됩니까?

○ 금융소득 종합과세 제도는 개인별로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할 때 종합과세를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자녀의 금융소득은 부모의 금융소득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다만, 명의만 자녀명의로 된 경우는 실제 소유자에게 합산과세됩니다.

[2-4] 공동사업을 하면서 사업과 관련된 주거래 통장에서 매월 이자소득이 발생하고 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자소득을 대표자의 다른 소득과 합산신고 해야 하는지요?

○ 사업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 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므로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득은 공동사업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금액을 각 거주자의 금융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여 종합과세하는 경우)

3. 금융소득의 범위

[3-1] 금융소득이란 무엇입니까?

○ 금융소득이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말합니다.

금융소득 = 이자소득 + 배당소득

[3-2] 이자소득이란 무엇입니까?

○ 이자소득이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소득을 말합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3.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 부금 예탁금 및 우편대체 포함)의 이자
4.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신용계(信用禊)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5.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이나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6.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7.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
8.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
9.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10.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2. 1. 1. 이후 최초 발생 소득부터 "유형별 포괄과세"적용)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파생상품이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

[3-3] 배당소득이란 무엇입니까?

○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의 소득을 말합니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2의2. 법인세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보는 신탁재산("법인과세 신탁재산"으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擬制配當)
4.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5.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5의2.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
6.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
8. 제43조에 따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에 대한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9.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2. 1. 1. 이후 최초 발생 소득부터 "유형별 포괄과세"적용)
10.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파생상품이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

[3-4] 채권을 보유하여 지급받는 이자도 금융소득에 해당됩니까?

○ 거주자가 국 공채나 회사채 등 채권을 보유하여 보유기간에 대해 지급받는 이자소득은 금융소득에 해당됩니다.

[3-5] 주식이나 채권의 매매차익도 금융소득에 해당됩니까?

○ 거주자가 주식이나 채권 등 유가증권을 매매하여 취득하는 매매차익은 금융소득이 아니므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 다만,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나 비상장법인의 주주가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됩니다.

[3-6] 국외금융회사 등에 예금하거나 외국정부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매입하여 지급받는 이자도 금융소득에 해당됩니까?

○ 국외에서 지급받는 이자도 금융소득에 해당되는 이자소득입니다.

① 국외금융회사 등에 예금하여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와 투자신탁의 이익
②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보유하여 지급받는 이자와 할인액

※ 이자소득으로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받는 금액과 관계없이 종합과세 됩니다.

[3-7]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보유하여 지급받는 배당도 금융소득에 해당됩니까?

○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보유하고 지급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은 금융소득에 해당됩니다.

※ 배당소득으로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받는 금액과 관계없이 종합과세 됩니다.

[3-8] 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등을 예금하여 얻은 이자소득도 종합과세됩니까?

○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임차인으로부터 받는 임대보증금 등을 정기예금 등으로 금융회사 등에 예치하고 지급받는 이자는 이자소득입니다.

- 해당 이자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되지 않고, 그 이자소득을 다른 이자 배당소득과 합산한 금액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과세됩니다.

[3-9] 금융소득금액은 실지로 지급받는 금액으로 합니까?

○ 금융소득금액은 소득자가 실지로 지급받은 금액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금융소득 지급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공제하기 전의 이자 배당소득금액 총액을 말합니다.

- 예를 들어 이자소득 1,000만 원에서 소득세 140만 원(14%), 지방소득세 14만 원(소득세의 10%)을 차감하고 846만 atform":"W원만 지급받더라도 이자소득은 1,000만 원입니다.

[3-10] 금융소득 산출세액 계산 시에 비용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까?

○ 거주자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비용)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급받는 금액(수입금액) 자체가 이자소득금액 또는 배당소득금액이 됩니다.

- 즉, 금융소득이 발생된 금융자산(예금 등)이 금융회사 등에서 대출받은 차입금일 경우에 차입금에 대해 지급한 지급이자나 예금인출 등에 소요된 교통비 등 비용이 발생되어도 이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3-11] 비상장회사인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로부터 배당금을 받았는데 종합과세 배당소득인지요?

○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은 2천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되는 금

융소득입니다.

[3-12]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국내 금융회사 등에 사업소득 외 재산을 예치하고 있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여부는?

○ 국내사업장 및 국내에 있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와 국내에서 취득한 광업권, 조광권,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어업권, 토사석채취에 관한 권리의 양도 임대 기타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없는 비거주자가 수취하는 이자 배당소득은 각각 분리하여 과세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이때의 이자 배당소득은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3-13] 외국의 증권시장에 상장된 외국법인의 주주가 금전배당을 받으면서 국내에서 지급대리인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경우에 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요?

○ 국외금융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다른 이자 배당소득과 합산한 금액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종합과세됩니다.

[3-14]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출자만 한 공동사업(이하 "출자공동사업"이라함)에서 분배받은 소득은 다른 사업소득과 소득세 신고방법이 어떻게 다른가요?

○ 출자공동사업에서 분배받은 소득은 배당소득으로 분류되며, 다른 금융소득과 달리 분배받은 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반드시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또한, 출자공동사업에서 분배받은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25%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며, 종합과세 기준금액(2천만 원) 초과여부 판단 및 배당가산(Gross-up)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출자공동사업에서 분배받은 배당소득 비교과세방법은 [7-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15]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출자만 한 동업기업에서 배분받은 소득(이하 "동업기업에서 배분받은 소득"이라 함)과 출자공동사업에서 분배받은 소득의 소득세 신고방법에 차이가 있나요?

○ 동업기업에서 배분받은 소득도 출자공동사업에서 분배받은 소득과 같이 배당소득으로 분류되며, 배당가산(Gross-up)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만, 출자공동사업에서 배분받은 소득은 종합과세 기준금액(2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금융소득에 대해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나, 동업기업에

서 배분받은 배당소득은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소득세 확정신고를 합니다.

4.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인한 세부담

[4-1]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금융소득에 대한 세금이 종전보다 늘어납니까?

○ 금융소득 종합과세에도 불구하고 일부 고액 금융소득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민들은 세금이 크게 줄었습니다.

- 이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시행과 함께 원천징수세율이 연차적으로 인하되어 금융회사 등에서 원천징수하는 세금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연 도 별	1999년	2000년	2001년	2005년이후
원천징수세율 (지방소득세율)	22.0%(2.2%)	20.0%(2%)	15.0%(1.5%)	14%(1.4%)

※ 예를 들면 이자소득이 1,000만 원인 경우에

- 1999년에는 세금 242만 원을 납부하고 758만 원을 수령
- 2001년 이후에는 세금 165만 원 납부, 835만 원 수령
- 2005년 이후에는 세금 154만 원 납부, 846만 원 수령

[4-2]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인하여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사람도 세금이 늘어납니까?

○ 금융소득 종합과세 시행과 함께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 이하인 대부분의 사람은 신고 등 추가적 불편 없이 세금부담은 크게 줄었습니다.

-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사람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이전과 동일하게 금융회사 등의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분리과세)
- 원천징수세율 인하로 금융회사 등에서 원천징수하는 세금이 크게 줄었습니다.

[4-3] 장기채권 등에 대하여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종합과세하는 것보다 세금부담이 줄어드나요?

○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이자소득이 30%(지방소득세 포함 33%)로 원천징수되어, 분리과세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인 14%(지방소득세 포함 15.4%)의 원천징수에 비하여 세부담이 2배로 늘어납니다.

○ 세법개정으로 2018. 1. 1. 이후 발행하는 장기보유채권에 대한 이자소득분리과세(30%) 제도가 폐지되어 해당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다른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과 합산하여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대상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5.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금액의 계산

[5-1] 모든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입니까?(종합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금융소득은 무엇입니까?)

○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은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 그러나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금융소득과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은 해당 금융소득의 크기에 불구하고 종합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제2장과 제3장의 본문 중 비과세와 분리과세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2]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이 있습니까?

○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금융소득과 출자공동사업자에 대한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의 크기와 관계없이 계속하여 종합과세 됩니다.

- 2천만 원은 14%의 세율을 적용하여 종합과세하고,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기본세율(6% ~ 45%)로 종합과세합니다.

[5-3]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액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금융소득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에서 종합과세 대상이 아닌 비과세 및 분리과세 금융소득을 제외한 금융소득의 합계액으로 2천만 원 초과여부를 계산합니다.

[5-4]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 거주자의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금융소득은 이자 배당소득을 연도별로 합산하여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전체가 종합과세됩니다.

[5-5] 국내에서 원천징수 되지 않은 금융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입니까?

○ 이자 배당 중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것은 모두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입니다.

- 다만, 해당 금융소득이 국내 금융회사 등에서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종합과세 됩니다.

[5-6]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금융소득도 종합과세 됩니까?

○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이자 배당소득은 모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7] 세금우대저축의 이자·배당소득도 종합과세 대상입니까?

○ 금융회사 등에서 원천징수세율이 14% 보다 낮은 세율인 9%를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세금우대저축의 이자 배당소득은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으로 종합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8] 예금·적금이자보다 대출에 따른 이자비용이 더 많은데 원천징수세액이 환급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별도의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매 관련 소송비용, 대여금 관련 차입금의 이자, 대여금 알선사례비 등이 이자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5-9] 금융소득 2천만 원까지는 종합과세 신고대상이 아닌 걸로 아는데 이때 2천만 원은 세전 이자소득인가요 아니면 세후 이자소득인가요?

○ 종합과세 신고대상 소득여부 판단은 세전 이자소득으로 하는 것이며, 이때 2천만 원 이하인 경우라도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는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5-10] 금융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기부금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 원천징수세율(14%)을 적용받는 이자 배당소득을 제외한 기본세율(6 ~ 45%)이 적용되는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기부금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6. 금융소득의 수입시기

[6-1] 어떠한 기준으로 연도별 금융소득을 계산합니까?

○ 금융소득은 연도별로 개인 금융소득을 파악한 후에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 금융소득이 귀속되는 연도(귀속연도)는 해당 금융소득의 수입시기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이자 등을 실지로 지급받지 않아도 수입시기가 도래하면 금융소득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수입시기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금융소득 종류별 수입시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2장과 제3장의 본문 중 수입시기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2] 비상장법인의 주주총회 잉여금처분 결의일(기명주식)이 2023. 3. 10.인 경우 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까?

○ 배당소득의 경우 잉여금처분 결의일이 수입시기이므로 2022 사업연도에 대한 배당이 2023. 3. 10.에 잉여금처분 결의된 경우에는 2023년 귀속 배당소득이 되므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일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2024년 5월 31일(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ÿÿÿÿÿÿÿ°6월30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것입니다.

[6-3] 2020. 1. 15.부터 3년간 납입한 정기예금이 2023. 1. 15.에 만기가 되어 원금과 만기이자를 수령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 정기예금은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은 날을 수입시기로 하므로 2023년에 만기가 되어 이자를 수령한 경우에는 2023년 귀속 이자소득이므로 2024년 5월 31일(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6월30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것입니다.

7. 금융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계산

[7-1] 금융소득 산출세액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되는 경우에 산출세액은 비교과세방법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 비교과세란 금융소득을 종합과세 할 경우의 소득세가 원천징수하는 경우의 소득세보다 적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 금융소득을 종합과세할 때의 산출세액과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되지 않는다고 가정할 경우의 원천징수세액을 서로 비교하여 큰 금액을 산출세액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 비교과세에 의한 산출세액 계산 시 출자공동사업자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이 아닌 다른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비교과세방법>

다음 ①과 ② 중 큰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으로 합니다.

① 금융소득을 기본세율로 과세 시 산출세액(㉠+㉡)
㉠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과 금융소득 이외의 종합소득에 대해 종합소득공제 후 기본세율(6 ~ 45%)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
㉡ 2천만 원 이하 금융소득에 14%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
② 금융소득을 원천징수세율로 과세 시 산출세액(㉠+㉡)
㉠ 금융소득 전체에 14%(비영업대금의 이익은 25%)의 세율을 적용한 소득세
㉡ 금융소득 이외의 종합소득에 대해 종합소득공제 후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
* 다만, ㉡의 세액이 출자공동사업자에 대한 배당소득에 대하여 14%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과 금융소득 및 출자공동사업자에 대한 배당소득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을 합산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종합소득 비교세액으로 한다.

[7-2] 금융소득 종합과세 비교과세 사례

【사례 1】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이자소득이 있는 경우(14% 이자소득만 있음)

(1) 2023년도 종합소득현황
① 은행예금 이자 : 50,000,000원
② 회 사 채 이자 : 50,000,000원
③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이자 : 5,000,000원
(2) 종합소득공제는 5,100,000원

(계산내역)
(1)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금액
①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금액 : 1억 원(은행예금이자 및 회사채이자)
☞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이자는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으로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금액에서 제외됨
② 기준금액 초과 금융소득 : 100,000,000 - 20,000,000 = 80,000,000원
(2)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계산
① 금융소득을 기본세율로 과세 시 산출세액
(2천만 원 초과금액 - 종합소득공제) ×기본세율 + 2천만 원 × 14%
= (80,000,000 - 5,100,000) × 기본세율 - 누진공제 + (20,000,000 × 14%)
= (74,900,000 × 24% - 5,220,000) + 2,800,000
= 12,756,000 + 2,800,000 = 15,556,000원
② 금융소득을 원천징수세율로 과세 시 산출세액

금융소득 × 14% = 100,000,000 × 14% = 14,000,000원

③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①과②중 큰 금액인 15,556,000원

【사례 2】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1) 2023년도 종합소득현황

① 은행예금 이자 : 10,000,000원

② 비영업대금이익 : 30,000,000원

③ 비상장법인 배당 : 30,000,000원

④ 상장법인 배당 : 20,000,000원

(2) 종합소득공제는 5,100,000원

(계산내역)

(1)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금액

①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 : 90,000,000원

② 기준금액 초과 금융소득

90,000,000 - 20,000,000 = 70,000,000원

• Gross-up 금액 = 50,000,000 × 11% = 5,500,000원

•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 : 70,000,000 + 5,500,000 = 75,500,000원

(2)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계산

① 금융소득을 기본세율로 과세 시 산출세액

(종합과세금액 + Gross-up 금액 - 종합소득공제) ×기본세율 – 누진공제액 + (2천만 원 × 14%)

= (70,000,000 + 5,500,000 -5,100,000) × 24% - 5,220,000 + 20,000,000 × 14%

= 11,676,000 + 2,800,000 = 14,476,000원

② 금융소득을 원천징수세율로 과세 시 산출세액

(비영업대금이익 × 25%) + (그외 금융소득금액×14%)

= (30,000,000 × 25%) + (60,000,000 × 14%) = 15,900,000원

③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① 과②중 큰 금액인 15,900,000원

《참고》 배당가산(Gross-up) 대상 배당소득금액 계산

☞ 이자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이 있고 그 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배당가

산할 금융소득은 다음 순서에 의해 순차적으로 2천만 원까지 범위를 계산하고 그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을 종합과세 시 배당가산합니다.
① 이자소득 → ② 배당가산되지 않는 배당소득 → ③ 배당가산대상 배당소득

【사례 3】이자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1) 2023년도 종합소득현황
① 은행예금 이자 : 60,000,000원
② 사업소득금액 : 30,000,000원
(2) 종합소득공제는 5,100,000원으로 가정

(계산내역)
(1)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금액
①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 : 60,000,000원
(2)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계산
① 금융소득을 기본세율로 과세 시 산출세액
(2천만 원 초과금액+사업소득금액-종합소득공제)×기본세율+2천만 원×4%
= (40,000,000 + 30,000,000 - 5,100,000) ×기본세율+ 20,000,000 ×14%
= (64,900,000 × 24% - 5,220,000) + 2,800,000 = 13,156,000원
② 금융소득을 원천징수세율로 과세 시 산출세액
금융소득금액×14% + (사업소득금액- 종합소득공제) ×기본세율
= 60,000,000 ×14% + (30,000,000 - 5,100,000) ×기본세율
= 8,400,000 + (24,900,000 ×15% - 1,080,000) = 11,055,000원
③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①과②중 큰 금액인 13,156,000원

[7-3]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는 국외금융소득이 370만 원 있고, 타소득이 1,000만 원 있는 경우 산출세액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요?(소득공제 210만 원)

○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을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① [1,000만 원 - 210만 원(소득공제)] ×6% = 474,000원
② 370만 원 × 14% = 518,000원
①과 ②의 합계금액인 992,000원이 산출세액입니다.

[7-4] 사업소득과 이자소득이 있고, 사업소득금액에서 결손금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자소득

에서도 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는지요?

○ 사업소득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거주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이자소득이 있는 경우 원천징수세율(14%)을 적용받는 부분은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나, 종합소득세율(누진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부분에 대해서는 납세자가 그 소득금액 범위 안에서 공제여부 및 공제금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8. 배당세액공제

[8-1] 배당세액공제는 무엇인가요?

○ 법인 단계에서 이미 법인세가 과세된 소득을 주주에게 배당할 때 그 배당소득에 대하여 다시 과세하면 동일한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게 되므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법인세 과세분인 배당가산액(Gross-up 금액)을 배당소득금액에 가산하였다가 다시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데 이를 "배당세액공제"라 합니다.

○ 다만, 배당세액공제 시 배당가산(Gross-up)에 의해 산출된 세액이 최소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 이상이 되도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배당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 2011 ~ 2023귀속 배당가산 시 적용되는 배당가산율은 11/100입니다.
(2009. 1. 1. ~ 2010. 12 .31. 기간은 12/100)

[8-2] 모든 배당소득에 대해 배당세액공제가 적용되나요?

○ 배당세액공제는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 법인 단계에서 이미 법인세가 과세된 배당소득에 대해서만 배당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다음의 배당소득은 배당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①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의 소각이익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② 토지의 재평가차액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③ 법인이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준비금·재평가적립금을 자본전입함에 따라 해당 법인 외의 주주 등의 지분비율이 증가한 경우 증가한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주식 등의 가액에 의한 의제배당

④ 「조세특례제한법」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법인세의 비과세 면제 감면 또는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외의 법률에 의한 비과세 면제 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포함한다)를 받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배당소득금액에 아래 산식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text{비 율} = \frac{\text{직전 2개 사업연도의 감면 대상 소득금액의 합계액} \times \text{감면비율}}{\text{직전 2개 사업연도의 총소득금액의 합계액}}$$

※ 「법인세법」제51조의 2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6을 적용받는 법인은 100분의100으로 하며, 비율은 100%를 한도로 한다.

[8-3] 배당세액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배당세액공제 시 배당가산에 의해 산출된 세액이 최소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세액 이상이 되도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배당세액공제를 적용하며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배당세액공제액 : 아래 ①, ② 중 작은 금액
> ① 배당가산액(Grosss-up 금액)
> ② 종합소득 산출세액 분리과세방법에 의한 산출세액

[8-4] 배당가산이 적용되는 배당소득과 적용되지 않는 배당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배당세액공제 대상 배당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2천만 원)은 납세자에게 유리하도록 아래 순서에 따라 합산합니다.

① 이자소득부터 합산
② 배당가산(Grosss-up)이 적용되지 않는 배당소득을 합산
③ 배당가산(Grosss-up)이 적용되는 배당소득을 합산

9. 신고·납부

[9-1]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이 있는 사람은 소득세 신고를 어떻게 합니까?

○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있거나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는 금융소득이 있는 사람은 다음연도 5월(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2023년 금융소득은 2024년 5월 31일(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금융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금융소득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9-2] 금융소득이 부부에게 모두 있는 경우는 부부 중 누가 신고합니까?

○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하는 금융소득은 부부 각자 개인별로 금융소득 이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9-3] 봉급생활자인데 비상장법인의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까?

○ 배당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10. 금융소득명세서 제공

[10-1]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알 수 없는데 금융소득내역을 세무서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의 신고편의를 위해 금융회사 등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금융소득지급명세서를 기초로 하여 매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중에만 금융소득명세서를 제공합니다. 올해의 경우 2024. 5. 1. ~ 2024. 5. 31.(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7.1.까지)기간 중 제공합니다.

- 금융소득명세서는 홈택스(www.hometax.go.kr)나 세무서 방문을 통해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홈택스 조회 : 금융소득자 본인이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 도움 자료 조회] → [금융소득 조회]를 통해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금융 공동 간편인증 로그인한 경우만 가능)
- 서면요청 : 금융소득자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여 금융소득명세서 제공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금융소득자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법정대리인(부모 등)의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요청하는 경우 소득자의 위임장(인감증명서를 첨부)과 대리인 신분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10-2]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세무서에 금융소득명세서 제공을 요청할 수 있나요?

○ 세무서에서의 금융소득명세서 제공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의 신고편의를 위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중에만 제공하는 것이므로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거나 확정신고 기간 외의 기간에는 거래하는 금융회사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10-3] 세무서에서 제공 받은 금융소득명세서와 금융회사 등에서 제공 받은 자료가 다른데 어떤 자료를 기준으로 신고해야 합니까?

○ 금융회사 등에서 금융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중복제출, 오류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금융소득명세서 내용이 사실과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금융회사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라며, 누락된 자료는 해당 금융회사 등에서 개별적으로 수집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10-4] 세무서에서 제공받은 금융소득명세서를 금융회사 등 다른 기관에 소득금액을 증명하는 서류로 제출이 가능합니까?

○ 세무서에서 제공하는 금융소득명세서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의 신고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명세서일 뿐 금융소득금액을 증명하는 서류가 아니므로 금융회사 등 다른 기관에 소득금액을 증명하는 서류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통 화 명	11월 15일 (금)	11월 18일 (월)	11월 19일 (화)	11월 20일 (수)	11월 21일 (목)
미 달 러 (USD)	1406.40	1402.80	1392.60	1392.00	1391.60
일 본 엔 (JPY)	899.61	906.93	901.39	900.56	895.87
영 국 파 운 드 (GBP)	1781.21	1770.26	1764.91	1765.40	1760.51
캐 나 다 달 러 (CAD)	1000.04	995.99	993.19	997.49	995.89
홍 콩 달 러 (HKD)	180.74	180.15	178.91	178.84	178.80
위 안 화 (CNH)	193.91	193.47	192.35	192.41	192.28
유 로 화 (EUR)	1481.08	1477.99	1475.39	1475.10	1467.37
호 주 달 러 (AUD)	907.55	906.42	905.61	909.53	905.65
싱 가 폴 달 러 (SGD)	1045.03	1045.03	1040.15	1040.48	1036.19
말레이시아링기트 (MYR)	313.89	313.79	310.81	311.20	311.22